

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·집단급식소운영자·통신판매업자의

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(제21조 관련)

1.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

가. 이력관리대상축산물(부산물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을 조리·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.

- 1)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
- 2)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
- 3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
- 4)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
- 5) 별도 게시판 또는 팸말
- 6) 인터넷 홈페이지(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)
- 7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

나.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,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1) 계산대
- 2) 출입문 주변
- 3)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

다.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,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. 다만,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·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.

라.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.

2.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

가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 등(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)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.

나.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.

3.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

가.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·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.

나. 인터넷, TV,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「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,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‘이력번호 표시 제품임’을 표시해야 한다.

1) 표시 시기: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

2) 표시 문구(예시): 이력번호 표시제품임.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.

다.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.

1) 설명 방법: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, 반복적(1회당 2번 이상)으로 설명

2) 설명 문구(예시):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,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.

4.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